

「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」 ‘성과기업 후속 지원’ 주관기관 모집공고

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후속 협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3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 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실명 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
② 실명 등록 경로 : www.siren24.com (☎ 1577-1006)

*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
1

모집 개요

□ 사업목적

-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*에 참여한 우수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시장검증(PoV) 등 후속 협업을 지원할 주관기관 선정

*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,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,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, 초격차 개방형 혁신 사업 등

□ 선정규모 : 1개 기관

□ 운영기간 : 2년 ('26~'27년)

* 사업 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
□ 지원예산 : 총 8억원 내외

* 지원예산은 예산심의·확정 결과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

2

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 자격

- 수요기업(대·중견기업·공공기관 등)과 창업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상생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

구분	신청 자격
공공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『공공기관운영법』 제4조(공공기관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• 『지방공기업법』 제2조(적용범위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• 『지방출자·출연법』 제2조(적용대상 등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민간 기관 (단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 지주회사 •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• 『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•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·협회·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*이 "B" 이상이어야 함 <p>*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(또는 기업어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(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,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) 기준</p>

□ 신청 제외 대상

- 신청기관 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

-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
-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- ⑤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- ⑥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⑦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
-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⑨ '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' 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

□ 창업지원사업 역량 및 전문성

- (대외협력) 대·중견기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*을 기획·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
- * 대·중견기업의 기술·사업화 수요 등을 기반으로 창업기업과 수요기업을 매칭하고, 창업기업의 시장검증(PoV)·투자연계·판로개척·성과확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
- (사업관리)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해 대·중견기업·공공기관 등과 창업기업 간 협력사업을 기획·관리·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
- (운영관리) 리스크 대응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, 사업운영 전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

□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

- (전담조직 설치)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관기관 내 전담조직(독립 부서)*를 구축하고 전담인력**을 해당 부서 배치하여야 함
 - * 전담조직은 신청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하나, 타 조직으로부터 독립성과 창업지원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
 - **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업무 참여율이 100%인 수행 인력을 의미
- (전담조직 구성) 전담조직의 장(1인)과 전담인력(5인 이상)으로 구성
 - * 전담조직 설치·운영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 - 전담조직의 장 :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(또는 주관기관의 장)로서 창업기업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기획·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
 - 전담인력(5인 이상) : 대·중견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지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*를 3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
 - * 공고일 기준 신청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로 중이며, 본 사업에 참여 예정인 자

4

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

1 선정 및 관리

- (기업 선정) 중소벤처기업부 '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'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협업팀 (수요기업 및 창업기업) 선정·평가 운영
 - * 지원 대상 세부 범위 및 선정연도 기준 등은 최종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
- 지원규모 : 총 81개사 내외
- (기업 관리) 내·외부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·선정, 기업별 현황·성과관리, 민원 응대, 사업비 관리(회계 승인, 증빙자료 보완 등)
- (점검·평가) 사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(수시, 중간, 최종), 평가(최종) 및 사업비 집행·관리, 회계 정산 관리
 - *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협약 종료 후 5년간 창업기업 성과관리를 지원하여야 함

2 프로그램 운영

- ※ 프로그램 예산 편성은 **정부지원사업비의 50%이상** 계상
- ※ 창업기업에게 현금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운영 불가
- ※ 자체 역량을 활용하여 1개 이상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하여야 함
- ☞ 전체 프로그램 3개(필수+자율) 중 1개 이상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에서 직접 수행

- (필수 프로그램) 선정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2개 (①시장검증(PoV), ②후속 협업 및 투자 연계) 운영

구분	세부 내용(안)
시장검증(PoV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정의 : 협업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수익성·고객반응 등 시장 수용성 검증• 프로그램 : 수요기업(대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) 대상 실증·파일럿, 테스트베드 연계, 판로 확대 등
후속 협업 및 투자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정의 : 시장 검증(PoV) 결과를 토대로 후속 협업 및 투자·정책 자금 연계를 통한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• 프로그램 : 데모데이(IR) 개최 등 후속 투자 유치 매칭, 수요기업의 직접투자(CVC 등), 구매계약 체결 지원 등 등

- (자율 프로그램) 주관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

* 예시 : 글로벌 진출, 전문 멘토링·교육, 기술보호 지원 등

5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 기간 : 2026년 7월 3일(금) ~ 7월 22일(수) 16:00까지

- 1) **1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**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16시 이전에 1단계 '저장'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날 17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, 보완 등이 허용 단, 16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는 신청 및 제출 절차 개시는 불가
- 2) 신청·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스타트업 가입 및 사업신청'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3) 반드시 접수 기한 내에 '제출 완료'하여야만 접수 처리되며, "제출완료"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

□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- (신청 방법) K-스타트업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 →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
 - *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- (제출 서류) 제출 공문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참여 전담인력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 등(* 우편 제출 불가)
 - * 신청 이후 제출한 자료의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

제출 서류 목록	비고
① 제출 공문(신청기관)	기관장 직인본, ② 사업계획서 및 ③ 증빙서류는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
② 사업계획서 [양식 1]	
③ 사업계획서 증빙서류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양식 2]	
④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(민간기관)	신청·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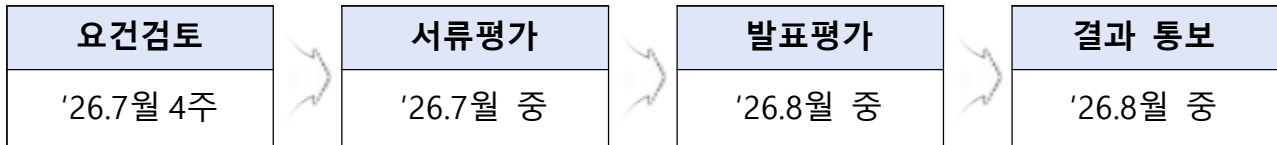
6

평가 및 선정절차

□ 평가 절차

- 2단계 평가 (서류평가 → 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 선정

< 평가 절차 운영(안) >

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

** 단계별(서류 및 발표)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

***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 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□ 평가 방법

- 서류평가 : 신청요건 확인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의 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
 - * 신청기관이 5개 기관 이하일 경우 전체 기관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
- 발표평가 : 창업기업 선정·관리,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① 서류평가 합격자(발표평가 대상기관)에 한해 발표자료(PDF) 제출을 별도 요청

② 발표평가는 전담조직의 장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* 평가시간 : 40분 내외 (발표 20분, 질의응답 20분 내외)

- 최종 선정 : 서류평가(50%) 및 발표평가(50%)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,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
 - 단, 신청기관(요건검토 통과 기준)이 5개 기관 이하일 경우 발표평가(100%) 점수로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

□ 평가 지표

-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력사업 전문성, 사업운영 적정성,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 평가 지표 운영(안) >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협력사업 전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·중견기업·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창업지원 인프라 활용 가능성 • 시장검증(PoV), 투자연계, 판로개척, 성과확산 등 협력사업 운영역량 	30점
사업운영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성과 •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구성 적정성 	30점
사업계획 구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·중견기업 등의 기술·사업화 수요 발굴 계획 • 대·중견기업 등과 창업기업 간 협력사업 기획 및 창업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	30점
사업비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	10점
합 계		100점

◆ **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
* **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센터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**
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-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,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세부관리기준,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사업 신청은 **신청기관의 대표자**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 - * 신청기관의 장 (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)
-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접수 기간('26.7.14.(화), 16:00)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,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
 - 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 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
-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,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전담조직 설치·구성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함
 - * 의무 사항 이행 내용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- ** 기한 내 신청 요건 미충족 시,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,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,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(PMS)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모든 참여 인력 및 회계 담당 직원은 신원보증보험 가입 필수이며,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 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비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

8

문의처

□ 시스템 문의

- (중소기업통합콜센터) 국번없이 1357

□ 사업 및 공고 관련 문의

- (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) 044-410-1720, 1767, 1768